

2019년도

## 무형문화재위원회 제5차 회의 안건

- ▣ 일 시 : 2019. 3. 22.(금)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서연호, 채금석, 안귀숙, 신태근, 조일상, 장남원,  
홍나영, 정복상, 박상미, 김태식, 이정덕, 함한희,  
진명(정혜린) (이상 13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목 차

## 【심의사항 1건】

1.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 1

## 【검토사항 1건】

1.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보유자 인정 검토 …… 5



심 의 사 항

## 1.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 가. 제안사항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의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8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5차 회의('18.12.21.)에서 '전통어로방식'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19.1.29.~)하고, 종목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추진경과

- 2018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보고('18.1.23.)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학술연구용역 실시('18.5.8.~10.31.)
- 종목 지정 예고 검토(무형문화재위원회 제15차 회의, '18.12.21.)
  - '전통어로방식'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함
  -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 2) 예고사항(관보 제19430호 / 2019.1.29. / 문화재청 공고 제 2019-27호)

##### ○ 예고내용

- 문화재명 : 전통어로방식
- 지정사유
  -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어량(魚梁)을 포함한 전통어로방식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어업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어촌 지역 생업의 근간이었음.
  - 전통어로방식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각종 관찬(官撰)자료는 물론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집(文集)에서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음. 어촌

(漁村)과 어민(漁民)의 생업 및 민중생활사, 어업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

- 전통어로방식은 어민들에 의해 구전(口傳)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 한국의 어촌 문화, 자연과 생태, 계절과 물때를 살피 물고기를 잡는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문화적 자산임.
- 우리나라의 전통어로방식은 바다 생태 환경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경관을 구성하고, 조선 후기 이후 다양한 어구(漁具)들이 어살의 원리를 변형하여 이용한 경우가 많음. 지역의 생태 환경에 맞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어살이 확인되며, 그 구조와 형태 또한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음.
- 이처럼 전통어로방식은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전통어로방식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 예고결과 : **이의제기 없음.**

## 라. 검토의견

- 2018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5차 회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어로방식’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 종목 명칭과 관련하여 ‘18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8.1.23.) 시에는 ‘전통어로방식(죽방렴, 석방렴)’으로 종목 명칭이 검토되었음. ‘18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전통어로방식‘을 제안하였으나, 조사가 이루어졌던 서해안 ’살‘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는 어구, 조선 초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석방렴, 일제 강점기에 새롭게 등장한 경상도의 죽방렴, 그리고 서해안을 대표했던 ’주벽[柱木網]‘과 남해안을 대표했던 장살과 줄살 등은 ‘어살(漁箭)’로 포괄할 수 있음.
- 전통어로방식에 다양한 어법(漁法)이 전승되고 있어 향후 지정될 수 있는 종목도 고려한다면, ‘전통어로방식’을 대표 종목으로 지정하고 세부종목으로 ‘어살(漁箭)’을 지정할 것을 제안함.

마. 심의할 사항 :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

바. 의결사항

○ 가결함

-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 종목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함

-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으로 지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가결 13명

검 토 사 항

## 1.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보유자 인정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